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광진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에 건강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 의료보장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9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 유급병가 제도는 근로자가 아플 때 빠른 시간에 치료를 받게 하고 동시에 가벼운 질병이 중증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외래진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원이 필요 없는 독감이나 입원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외래진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신생물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근로자

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1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생계를 위해 아파도 일해야만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에게 검진 및 입원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계보장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정의에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까지 추가하여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소득보전’과 ‘지원항목 및 지원기간’에 대한 신설, 지원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